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직업성 암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정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4826호) 4조 1항에 의하면 '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질병을 포함한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의 범위나 인정기준 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관련 분야 종사자들은 관심을 갖고 항시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란에서는 관련된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직업성 암 등과 관련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최근의 법원 판례를 소개한다.

심장질환 ⑦

심부전증

-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3. 2. 25. 선고, 92구7049 판결
- 참조조문 산재법 제9조의 6, 제9조의 9
-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3690 판결

판결요지

평소에 아무런 지병도 없는 상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자가 한국교원대학교에 파견근무를 명받아 대학원과정을 이수중 갑자기 한밤중에 집에서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사망이 인정된다.

◆판결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1, 3, 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이철관 1990년 3월 1일부터 대구 동부교육청 관내 남산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1993년 3월 1일부터 한국교원대학교 파견근무를 명받아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공부하여



명대학교 도서관 등을 다니며 수험준비를 하면서,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서도 다음날 교과내용을 준비, 점검하는 등 교육 및 학습에 노력하였고, 그 결과 1993년 3월 1일부터 한국교원대학교에 파견근무를 명받아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게 되었다.

(4) 위 망 이철관은 위 한국교원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주당 10시간씩의 대학원 수업을 받는 외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학과 수업모형연구 등 공동연구활동에 참여하고 과학교육연구 세미나 발표 준비, 과학교육전공원서 번역 작업, 물리학과제 발표준비, 교육학 공부, 대학원석사과정 논문계획서 자료수집활동 등을 하면서, 그 무렵에는 이로 인하여 06시 00분경에 기상하여 책을 보다가 07시 00분경 등교하여 08시 00분경, 아침 식사를 마친 후부터 23시 00분경까지 초등교육학과 연구실, 도서관 등에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귀가하는 바쁘고 고된 생활을 하고, 대학원 신입생으로서 잘 해보려는 긴장감을 가지고 위와 같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게 나왔다.

(5) 위 망 이철관은 위 남산초등학교에 초임교사로 발령 당시 몸집이 좋고 배도 약간 나온 상태인데, 교사로 근무하기 시작한 1991년 5월경부터는 몸이 야위어 가고 안색도 좋지 않았고, 아침세수를 하다가 코피를 종종 흘리기도 하였으며, 1992년 6월 8일 대구적십자병원에서 실시한 공무원 정기 건강진단에서는 아무런 질병이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으나, 위 한국교원대학에 파견근무를 할 당시에는 혈색도 창백하고 항상 피곤함을 느끼면서 마음은 공부하고 싶으나 몸이 안따라서 항상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하는 등 동료에게 누적된 피로감에 대한 하소연을 하였다.

(6) 위 망 이철관은 1993년 3월 19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굉장히 피곤하다고 하면서도 변함없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 공부를 하고, 17시 00분경 출발하여 23:00분경 대구에 있는 자택에 도착하여 피곤하다며 바로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음날인 같은 달 20일 03시 40분경 의식을 잃은 채 숨이 거칠어지고 입에서 거품이 흐르는 것이 가족들에게 발견되어 가족들에 의해 계명대학교 부속동산병원으로 후송하는 도중 사망하였고, 위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폐기능부전이나, 중간 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소위 망 이철관이 한국교원대학교에 파견근무를 명받아 연구 및 공부하는 것은 바로 공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망인이 26세를 갓 넘은 청년으로 평소 아무런 지병도 없는 상태에서 전에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할 당시 쌓인 피곤에다가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는 위와 같은 공부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심폐기능부전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위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